

영등포구의회
제129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7. 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6. 25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이유
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음식점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규정 (안제2조제2호)
-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의 지원근거 신설(안제8조제6항)

관련법규

- 『폐기물관리법』 및 같은법시행령·같은법시행규칙
- 『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조례개정 촉구 공문 - 2007. 5. 8 서울특별시(환경과)』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대부분 개정 완료함.

검토의견

- 2005. 12. 31 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

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

- 안 제2조제2호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㎡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대상을 명시하고 차류나 제과류를 주로 판매하는 다방,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250㎡이하의 커피, 주류판매 전문점 등에 대하여는 제외 규정을 두었으며,
- 안 제8조제6항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소정의 전용용기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7. 6.

보고자 : 이 남 식